보험모집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모집인]

이 콘텐츠에서는 보험모집인 중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에 대한 자격 및 등록방법, 보험모집시 준수사항,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모집인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보험모집을 하려는 자는 이 콘텐츠를 통해서 등록부터 영업 및 영업종료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인 1
1. 보험모집인의 구분 4
1.1. 보험모집인은 누구인가요? 4
1.1.1. 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4
2. 보험설계사 7
2.1. 보험설계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7
2.1.1. 보험설계사 개념 및 등록 7
2.2.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10
2.2.1. 교차모집의 허용 10
2.2.2.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11
2.2.3. 교육 이수 의무 16
2.2.4.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17
2.3.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18
2.3.1.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18
3. 보험대리점 20
3.1. 보험대리점은 누구인가요? 20
3.1.1.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20
3.2.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23
3.2.1. 영업보증금 예탁 23
3.2.2. 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24
3.2.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의무 26
3.2.4. 보험대리점 운영 중 신고사항 27
3.2.5.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28
3.3.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30
3.3.1.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30
4. 보험중개사 32
4.1. 보험중개사는 누구인가요? 32
4.1.1.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 32
4.2.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35
4.2.1.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35
4.2.2. 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37
4.2.3.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39
4.2.4.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40
4.2.5.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41
4.3.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44
4.3.1.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44

1. 보험모집인의 구분

1.1. 보험모집인은 누구인가요?

1.1.1. 보험모집인의 개념 및 구분

※ 이 콘텐츠 에서는 보험모집인 중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대리점 및 ③ 보험중개사를 중심으로 보험모집인으로서의 자격과 업무의 개시, 영업 및 업무폐지(영업종료)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합니다.

보험계약의 특징

▪ '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이며,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638조 참조).

▪ '보험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보험업법」 제2조제1호 참조)으로서. 다른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모집인을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등 계약 모집 방식에 차이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보험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모집의 제한

▪ 보험회사는 불특정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본연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 및 일반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기본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국가의 엄격한 감독이 요구됨에 따라 「보험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26, 141쪽 참조).

▪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며(「보험업법」 제3조 본문),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및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143쪽 참조).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6호).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입니다.

보험모집인의 구분

▪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자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제도를 두고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3조제1항).

구 분	내용	근거조문
보험설계사	**[등록]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대리점	**[등록]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보험중개사	**[등록]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한다)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	「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등은 제외) 또는 직원	보험회사에 고용되어 보험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제4호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3쪽 참조>

Q. 보험모집은 누가 할 수있고, 모집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모집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업법」 제2조에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 종사자 및 행위에 대하여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 보험모집인별 관할기관

구분	등록 및 각종 신고	시험	교육
보험설계사	해당 보험협회	해당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
보험대리점	해당 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중개사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2. 보험설계사

2.1. 보험설계사는 어떻게 될 수 있나요?

2.1.1. 보험설계사 개념 및 등록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등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한 사람입니다.

보험설계사의 개념

▪ 보험회사등(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하 같음)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社團)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입니다(「보험업법」 제2조제9호).

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설계사는 영업 범위에 따라 생명보험설계사(간단생명보험대리점 소속의 간단생명보험설계사 포함), 손해보험설계사(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설계사 포함), 제3보험설계사(간단제3보험대리점 소속의 간단제3보험설계사 포함)로 구분합니다(「보험업법」 제4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제8조제1항).

구 분	개 념	영업 범위
생명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설계사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제3보험설계사	생명보험회사·생명보험대리점·생명보험중개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손해보험대리점·손해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보험설계사는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보험협회의 시험을 합격하여 신규등록을 하거나, 경력자가 교육을 이수하여 경력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요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참조).

- 신규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
- 경력등록의 경우: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 법인보험대리점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대리점·손해보험대리점·제3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갖춘 사람

① **신규등록**은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보험설계사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참조).

-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 보험협회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시험 합격 요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 ※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경력이 없는 경우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험협회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경력이 없는 자가 신규등록을 하려면 자격시험 합격이 필요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 참조).
>
> 보험설계사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① 생명보험협회 자격시험센터(exam.insure.or.kr)-보험설계사-시험안내-시험개요 및 ② 손해보험협회 모집종사자 관리센터(isi.knia.or.kr)-이용안내-FAQ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안내 및 합격자조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경력등록**은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등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제1호 참조).

③ 법인보험대리점 또는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보험대리점 등록요건 및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3-1-1)> 및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4-1-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Q. 보험설계사로 일하고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 **A.** 보험설계사가 되려면 ① 보험연수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모집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자격시험 합격 및 교육 이수)**하거나 ②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 이수** 후에**보험협회**에**등록** 후 일할 수 있습니다.
>
>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 등은 일정 기간 등록이 제한됩니다.

등록제한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84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위 5.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직무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임원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직원이거나 위에 따른 제재를 받기 전에 사임 또는 사직한 사람만 해당)으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않은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위 1.부터 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流用)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험설계사 등록은 신청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청합니다.

등록신청

▪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사람의 등록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협회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4조제1항, 제194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제4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제1항 및 별지 제7-2호서식).

구 분	협회의 장
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2.2.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2.2.1. 교차모집의 허용

보험설계사는 정해진 보험종목만 모집할 수 있으나 일정한 경우 교차모집이 허용됩니다.

교차모집의 허용

▪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85조제2항).

▪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등 이외의 자를 위한 모집(이하 “교차모집”이라 함)이 허용됩니다(「보험업법」 제85조제3항).

-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손해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생명보험회사나 손해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경우

> ※ **교차모집제도**는 보험설계사가 소속 보험회사 외의 1개의 이종(異種) 보험회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즉, 생명보험설계사 또는 손해보험설계사가 각각 1개의 손해보험회사나 생명보험회사를 선택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 더불어 생명보험회사 또는 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도 교차모집에 해당됩니다.
>
> <출처: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26, 147쪽 참조>

교차모집 시 금지행위

▪ 교차모집을 하려는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 업무상 알게 된 특정 보험회사의 정보를 다른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
-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등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중 어느 한 쪽의 보험회사만을 위하여 모집하는 행위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수수료·수당 외에 추가로 대가를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리적 근거 없이 다른 보험설계사보다 우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
- 교차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른 교차모집보험설계사 유치를 조건으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교차모집 관련 보험계약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 **Q. S 생명보험회사에 속한 설계사가 H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을 모집할 수 있나요?**
>
> **A.** 네,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회사외의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하지 못하나 2006년 8월부터 생명(손해)보험회사에 속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손해(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2.2.2.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주의사항

계약체결 및 모집과정에서의 금지행위

▪ 보험설계사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함)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함. 이하에서 같음)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
>
> ※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1항).
>
>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가 같을 것
>
>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보험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
> ※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은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
> √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 간 일치하는 담보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 및 가입목적 등을 고려할 때 새로운 보험계약의 청약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는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보험업법」 제97조제3항)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제외)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는 행위

-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허위 가공의 보험계약 예시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모집인이 청약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

√ 모집종사자(대리점 또는 소속 설계사)의 친인척, 지인 또는 기존계약자 등 실존인물의 명의(차명 또는 도명)로 청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출처: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36쪽 참조>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0호).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금지행위

▪ 보험설계사는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6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하여 동의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청약 내용, 보험료의 납입, 보험기간, 고지의무, 약관의 주요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해야 하며, 우편이나 팩스 등을 통하여 지체 없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답변 및 확인 내용에 관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자필서명이 면제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9호).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

▪ 보험설계사는 보험료를 받지 않고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2항).

▪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때에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1조제3항).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금품 제공이나 수수료 지급 금지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8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

- 금품(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0분의 10과 3만원[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위험을 감소시키는 물품의 경우에는 2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은 제외]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 이를 위반하여 위의 금품 등을 제공(「보험업법」 제89조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업법」 제202조제3호).

Q. 대량 구매를 통해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고객사은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서 '금품'이 시장가격 기준일까요, 보험회사가 구매한 실제 구입가 기준일까요?

A.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출처: 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better.fsc.go.kr)-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참조>

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준수사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 보험설계사는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계약(이하 "실손의료보험계약"이라 함)과 실제 부담한 손해액만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계약(이하 "기타손해보험계약"이라 함)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모집하려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의5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가 없는 보험계약>(「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1항 단서).

· 여행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여행업자가 여행자를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특정 단체가 그 단체의 구성원을 위하여 일괄 체결하는 보험계약

· 국외여행, 연수 또는 유학 등 국외체류 중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 중복계약 체결 확인 결과,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보장내용이 동일한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제3항).

※ 실손의료보험계약 등의 중복가입 확인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7호의2).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등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 보험안내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부분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보험사고의 조작 또는 과장 보험금 수령 금지의무

▪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의3).

-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금융상품판매업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0호)이면서,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로서 영업행위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신의성실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 차별금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금지행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 손해배상책임(「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 영업행위를 할 경우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계약서류의 제공의무 등을 지켜야 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금융소비자 보호』 콘텐츠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나요?

A. 네,보험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그 보험설계사가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또한,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가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의 선임과 그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는 1억의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험회사는** 이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제2호).

Q.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해야 하나요?

A.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다34159 판결).

2.2.3. 교육 이수 의무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 2년마다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 보험설계사는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1항 및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2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 간단보험설계사의 교육기준은 교육과목과 교육시간이 다르므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이상인 보험설계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인 경우를 말함[「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및 제4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교육 기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Q. 보험설계사가 보수교육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나요?

A. 관련 법조문 해석상 보험설계사에게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보험회사에 있으므로 교육비용 역시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방침으로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금지된 것은 아니나, 만약 이를 이유로 보험설계사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결국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 <출처: 한국보험대리점협회(www.iaa.or.kr)-보험상담 참조>

2.2.4.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보험설계사는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1항).

-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보험업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보험설계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2항).

-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사람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2)
-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 또는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한 경우(「보험업법」 제102조의3)
-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청문 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보험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취소 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2.3.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2.3.1. 보험설계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 제194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3호).
>
> √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보험업법」 제84조제2항)

√ 본인이 사망한 경우(그 상속인이 신고함)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5조제3항)

※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3. 보험대리점

3.1. 보험대리점은 누구인가요?

3.1.1. 보험대리점의 개념 및 등록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협회에 등록한 자입니다.

보험대리점의 개념

▪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협회에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0호 및 제194조제1항제2호).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대리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1. 영업 범위별

구 분	영위 종목별	영업 범위
손해보험대리점	손해보험회사를 위하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생명보험대리점”이라 함)를 포함]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
생명보험대리점	생명보험회사를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손해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라 함)를 포함]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연금 포함) 등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
제3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자신이 판매·제공·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제3보험상품을 모집하는 자(이하 “간단제3보험대리점”이라 함)를 포함]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3호)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48~49쪽>

2. 유형별

구 분	유형별
전속대리점	1개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비전속대리점	2개 이상의 보험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48쪽 참조>

3. 운영주체별

구 분	운영 주체별
개인보험대리점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
법인보험대리점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49쪽 참조>

보험대리점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요건

▪ 보험대리점은 운영주체별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운영주체별	등록요건	
개인보험대리점	아래 (1) 또는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규등록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대리점에 관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이수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한 시험 합격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 사람(「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1항)
	경력등록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대리점	아래 (1)과 (2)를 모두 갖춘 법인	
	(1) 개인대리점(생명·손해보험·제3보험)의 등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자격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2)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업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간단생명보험대리점, 간단손해보험대리점, 간단제3보험대리점은 제외)의 경우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요건을 갖춘 법인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3~54쪽 참조>

▸ 위 경력요건의 "해당 업무"는 다음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참조).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 그 밖에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생명보험·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개인보험대리점, 개인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 등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생명보험·손해보험 ·제3보험 상품의 모집업무에 종사한 경력

※ 운전기사, 교환원, 경비,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6쪽 참조>

※ 개인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면 보험모집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해당 보험 관계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는 사람은 보험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참조).

※ 보험대리점 시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험연수원(www.in.or.kr)-자격시험-보험대리점-시험개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신규등록 교육과 경력자등록 교육의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신규등록 교육은 신규등록자 또는 경력요건이 되지 않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등록교육**과 더불어 **해당 시험에 합격해야** 등록이**가능**합니다.

경력자등록 교육은 경력요건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시험 없이 경력자 **등록교육 이수**만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보험대리점협회(www.iaa.or.kr)-보험상담-보수교육 Q&A 참조>

보험대리점 등록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

▪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해당 보험협회에 등록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제1항 및 제194조제1항제2호).



①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보험회사를 선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회사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제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1항 및 별지 제7-4호서식)

개인	법인
등록신청서	등록신청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료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전산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고지사항, 이력서	고지사항, 이력서(모든 임원 및 유자격자)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임직원 명부
	주주명부
등록수수료: 1건당 2만원	등록수수료: 일반법인 1건당 20만원 금융기관 1건당 100만원

② 보험회사는 보험협회에 보험대리점 등록 전산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2항)

③ 보험협회는 등록 여부 심사 후 등록이 완료되면 보험회사로 등록증 발급

④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에 등록증을 교부하고 보험대리점은 영업 개시(「보험업감독규정」 제4-4조제3항)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53, 61쪽 참조>

Q.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이고,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소속된 보험회사의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는데 반해, 보험대리점은 계약 체결된 모든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Q.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점을 겸업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점을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38쪽 참조>

3.2.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3.2.1. 영업보증금 예탁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는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대리점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해당 보험회사에 다음 구분에 따른 영업보증금을 예탁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1항].

구 분	영업보증금
보험대리점	5억원 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예탁의무 면제

※ 영업보증금은 위 금액에서 보험대리점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해서 정하고(「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해 영업보증금 증액 명령 가능(「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영업보증금 예탁 방법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 현금
-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3.2.2. 보험대리점 운영 중 준수사항

보험대리점의 보험모집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

▪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 금지

▪ 보험대리점은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참조).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다음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1항).

-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의 예시
-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호
-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2항).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본문).

※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5조제3항 단서).

Q.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안내자료를 만들 수 있나요?

A.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77쪽 참조>

※ 보험안내자료 위반 주요 유형

- 보험회사가 아닌 ‘OO 금융그룹’이 계약당사자인 것처럼 호도(糊塗)
- 보험상품임에도 확정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은행적금인 것처럼 안내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43쪽 참조>

▪ 보험대리점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보험업법」 제86조제2항, 제88조제2항 및 제90조제2항)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주요 사항을 공시하고 해당 보험협회에 알려야 합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영현황 등 공시의무

-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의 사항을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7조의3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2항).
  - 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 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 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해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위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의4제3항).

> **Q. 보험대리점 공시(公示)는 어디에서, 어떻게해야 하나요?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의무사항인가요?**
>
> **A. 법인보험대리점에만 공시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을 통해 공지사항을 작성·입력할 수 있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자료를 기초로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함으로써 공시합니다.
>
>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77쪽 참조>

3.2.3.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5조의2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20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 간단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3.2.4. 보험대리점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대리점은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 보험대리점은 등록(「보험업법」 제87조)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보험대리점 계약의 체결 및 겸업 신고

▪ 보험대리점은 계약을 원하는 보험회사에 계약체결을 신청하고(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보험회사가 개인보험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4항 전단).

※ 보험대리점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동종의 다른 보험회사가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손해보험협회, 『모집관리업무 표준 매뉴얼』, 2023, 87쪽 참조).

▪ 보험대리점은 손해보험의 모집과 생명보험의 모집을 겸업하려는 경우, 계약체결을 원하는 다른 업종의 보험회사를 거쳐 겸업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7조제6항).

3.2.5.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8조제1항).

1.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
4. 보험대리점의 업무 범위를 위반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의3제1항)
5.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주된 목적으로 계약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101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88조제2항).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각 호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대리점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88조제3항).

취소 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대리점 및 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보험대리점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제132조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

※ 보험대리점이 위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대리점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구 분	조 치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대리점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보험대리점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대리점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대리점에 대해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제1항).

※ 보험대리점이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금융감독원의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Q. 보험대리점의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대리점 및 소속 설계사에 대하여 **부당행위 주체별로 처벌**(등록취소, 업무정지, 과태료 등)이 이뤄지게 되며, 제재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위탁검사**의 경우 검사완료 후 검사결과 지적사항이 포함된 검사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합니다. 금융감독원 내부절차를 거쳐 수검받은 대리점에도 검사서가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76쪽 참조>

Q. 보험대리점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A. 보험협회의 검사결과**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5, 76쪽 참조>

3.3.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3.3.1. 보험대리점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폐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대리점은 모집업무를 종료하려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94조제3항, 제4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4호).

신고내용	신고주체	신고기관
일반적 업무폐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보험협회
본인 사망	상속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법인 해산	청산인, 파산관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소멸	관리인 또는 계약체결한 보험회사	
직접 업무폐지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 보험대리점이 위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4. 보험중개사

4.1. 보험중개사는 누구인가요?

4.1.1. 보험중개사의 개념 및 등록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금융감독원장에게 등록한 자입니다.

보험중개사의 개념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보험업법」 제2조제11호).

보험중개사 도입배경 및 특징

▪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5년 11월 OECD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수용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함에 따라 1997년 4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출처: 한국보험중개사협회(www.ikiba.or.kr)-보험중개사란?-제도안내)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설계사 대리점과 달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조직입니다(출처: 한국보험중개사협회(www.ikiba.or.kr)-보험중개사란?-제도안내).

보험중개사의 구분 및 영업 범위

▪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이하 “개인보험중개사”라 함)와 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함)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제35조).

1. 영업 범위별

구 분	개 념	영업 범위
생명보험중개사	생명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생명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포함) 재보험
손해보험중개사	손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화재보험 ·해상보험 (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책임, 기술, 권리, 도난·유리·동물·원자력, 비용, 날씨 보험종목
제3보험중개사	제3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재보험

2. 운영주체별

구 분	운영 주체별
개인중개사	개인이 영위하는 보험중개사
법인중개사	상법상 회사형태로 운영하는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의 업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제1항].

※ '위험관리자문'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평가·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제2항).

보험중개사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요건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하려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및 별표 3 제3호 참조).

구 분	등록요건
개인보험중개사	(1), (2) 또는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개인인 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1)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신청일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한정)으로서 별표 4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
법인보험중개사	임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인생명보험중개사·손해보험중개사·제3보험중개사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상근하는 법인

※ 개인보험중개사로 등록하려면 교육이수 요건과 함께 해당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 참고).

금융감독원에서 실시(보험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면
합격증이 발급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함(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으로써
영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www.insis.or.kr)-시험안내-시험제도안내 참조].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경우 보험중개사 등록이 제한됩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제한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89조제2항).
  -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4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유(「보험업법」 제87조제2항제5호)
  -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보험중개사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다음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9조제1항, 제194조제2항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1-2호서식).

개인	법인
등록신청서	
등록요건(「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3 제3호)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력서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정관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 포함)
주주명부	

Q. 보험중개사는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과 무엇이 다른가요?

A.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반면, **보험중개사**는 '불특정다수'의 계약자나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다릅니다.

<출처: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생명보험협회, 2025, 155쪽 참조>

Q. 보험중개사 또는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업무자료 →보험업무 →중개사/전문인(업) 코너에서 상호(대표자명)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보험중개사 **등록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의 등록 여부는**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금융소비자보호 참조>

4.2.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4.2.1. 보험중개사의 영업개시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려면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합니다.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1항]

영업보증금액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구 분	영업보증금
개인	1억원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금융기관보험중개사	예탁의무 면제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는 영업보증금예탁신청서와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영업보증금을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2-14조제1항 및 제3항).

▪ 영업보증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예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제37조제4항).

- 현금
-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중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예탁된 증권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영업보증금을 다시 예탁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3조제5항, 제37조제4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제5항).

영업보증금의 반환사유 및 절차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 등록이 취소된 경우(「보험업법」 제90조제1항)

▪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중개계좌를 개설하고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 보험중개사는 영업개시와 동시에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수수료의 수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지급 등 보험중개업무와 관련된 모든 자금거래를 취급할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원보험중개와 재보험중개 계좌를 각각

개설함),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9조제1항).

Q. 보험중개사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및 중개계좌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등록 후 영업개시를 위해 영업개시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해야 하며, 이때 보험중개를 위한 전용계좌를 함께 신고합니다.

최초 영업보증금 예탁 및 보험중개계좌 신고 시 '보증보험증권 원본, 영업보증금 예탁신청서, 보험중계개좌 보고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출처: 「보험중개사 등록 후 유의사항」, 금융감독원(www.fss.or.kr)-업무자료 참조>

4.2.2. 보험중개사의 권리 및 유의사항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을 갖습니다.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율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제1항 참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할 것을 미리 보험계약자와 합의한 서면약정서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9조제3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 보험중개사는 위에 따라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제공할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1호).

보험모집 중개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장부 기재 및 비치의무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3호).

▪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과 갖춰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1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장부 기재 사항	비치서류
결약서(「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의 기재사항으로 「보험업감독규정」 제4-25조에서 규정한 사항	결약서 사본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	그 대가를 적은 서류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보험업법」 제101조)	그 내용을 적은 서류
-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 위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겸영(兼營) 금지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3호).

▪ 또한,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92조제2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26조).

- 상호출자
- 금전, 물품, 정보 등의 편의제공(금전, 물품, 역무, 고객으로부터 얻은 정보(단, 사전에 해당 고객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을 말함)
- 사무실의 공동사용(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거나 사무실이 동일 건물 내에 설치되어 있어 고객에게 같은 사무실이라는 혼동이 생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함)
- 인사교류(업무보조자 또는 임직원을 파견(단, 퇴직자의 경우는 제외)하는 것을 말함)

자기계약 금지

▪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보험업법」 제101조제1항).

※ '주된 목적으로 보는 경우'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를 말함(「보험업법」 제101조제2항 참조).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

▪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을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집니다(「보험업법」 제103조).

▪ 보험중개사가 그 보험계약자 등에게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손해배상책임을 면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보험중개 관련 주의사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해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1항).

▪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2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3항).

▪ 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해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4항).

▪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제5항).

그 밖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면서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보험업법」 제97조제1항제5호 참조).

> ※ 보험계약 모집단계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한 정보는 이 사이트(www.easylaw.go.kr) 『보험모집인』 콘텐츠의 보험설계사의 준수사항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3.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의 교육 이수 의무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음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5조의2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별표 4 제1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2항제4호 및 제6호).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및 제3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교육 기관	·보험회사 ·보험에 관한 교육을 위하여 소유하는 자회사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교육 시간	**22시간 이상. 이 경우 외부 교육 시간을 8시간 이상 포함해야 함**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기준 이상인 법인 아닌 보험중개사는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별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표에 따라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제3항 및 별표 4 제2호)

※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말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5조제3항).

구 분	교육기준
교육 과목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그 밖에 보험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교육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 과목
교육 기관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
교육 방법	집합교육. 이 경우 강사의 자격요건 등 교육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름
교육 시간	**12시간 이상**

4.2.4. 보험중개사 운영 중 신고사항

보험중개사는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그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 보험중개사는 보험중개사 등록 시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1호, 제194조제3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및 별표 8 제18호).

위탁 해지 신고

▪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7호, 제194조제2항제1호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보험중개사의 겸업신고

▪ 보험중개사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8호,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 겸업신고서
-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증 사본

▪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려는 법인은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합니다(「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2항).

4.2.5.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등록취소사유

▪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1항).

-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예외
-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보험업법」 제89조)을 한 경우
- 법인보험중개사가 업무범위(「보험업법」 제89조의3제1항)를 위반한 경우
- 자기계약 금지의무(「보험업법」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

▪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등록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2항).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취소 통보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보험중개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보험중개사는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보험중개사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구 분	조 치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4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 「보험업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보험중개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

▪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위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

※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4.3.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어떻게 종료하나요?

4.3.1. 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보험중개사는 영업을 종료하려면 금융감독원장에게 업무폐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구 분	신고자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보험중개사 본인
(개인)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
(법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	관리인이었던 자

※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보증금의 반환

▪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위의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